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삭제(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롱숏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모투자신탁삭제(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이하	증권총액의 50% 이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자산배분 시나리오> **<별첨 1>**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자산배분 시나리오> **<별첨 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2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항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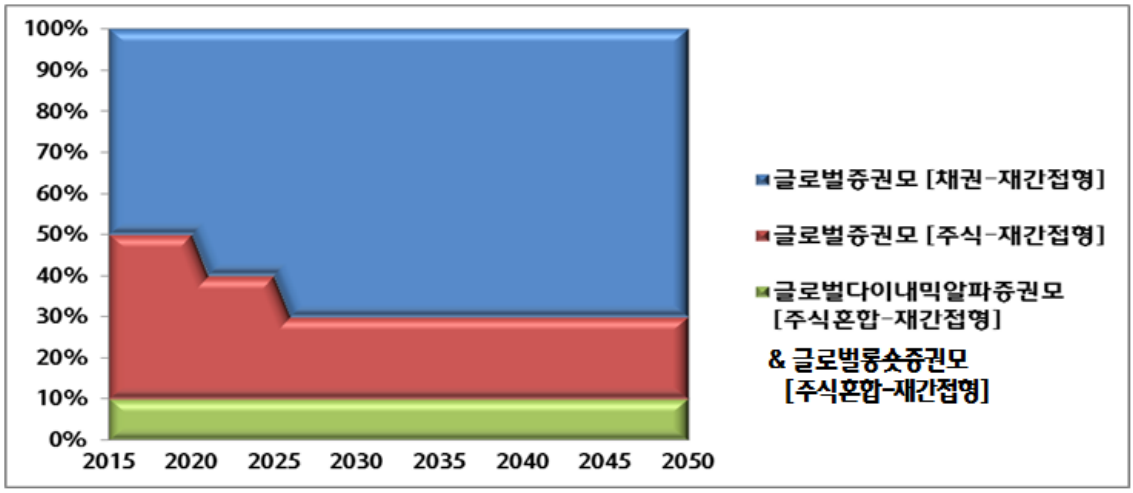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 UBS 글로벌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추가)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별첨 1>

[변경 전]

<자산배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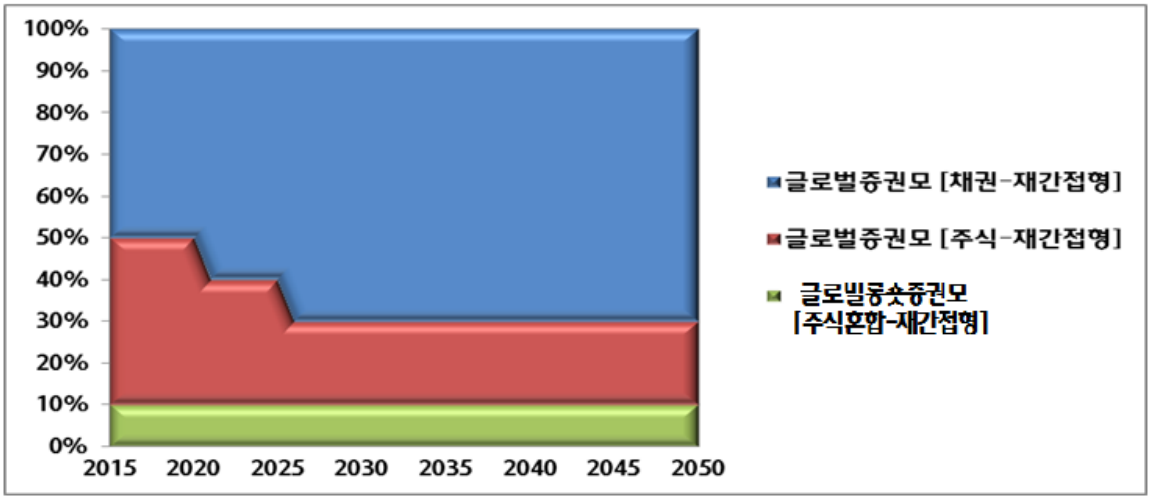
연도	2014~2020	2021~2025	2026~2030	2031~2035	2036~2040	2041~2045	2046~2050
글로벌증권모 [주식-재간접형]	40%	30%	20%	20%	20%	20%	20%
글로벌증권모 [채권-재간접형]	50%	60%	70%	70%	70%	70%	70%
글로벌다이내믹알파 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 글로벌롱숏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10%	10%	10%	10%	10%	10%	10%

주1) 상기 자산배분 시나리오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비중조절 시기,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과 글로벌롱숏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은 합하여 최대 10% 이내임.

[변경 후]

<자산배분 시나리오>



연도	2014~ 2020	2021~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1~ 2045	2046~ 2050
글로벌증권모 [주식-재간접형]	40%	30%	20%	20%	20%	20%	20%
글로벌증권모 [채권-재간접형]	50%	60%	70%	70%	70%	70%	70%
글로벌롱숏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10%	10%	10%	10%	10%	10%	10%

주1) 상기 자산배분 시나리오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비중조절 시기,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삭제(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롱숏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모투자신탁삭제(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이하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자산배분 시나리오> **<별첨 1>**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자산배분 시나리오> **<별첨 1>**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24일 이후 매년

	<신설>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	**1. 재무정보**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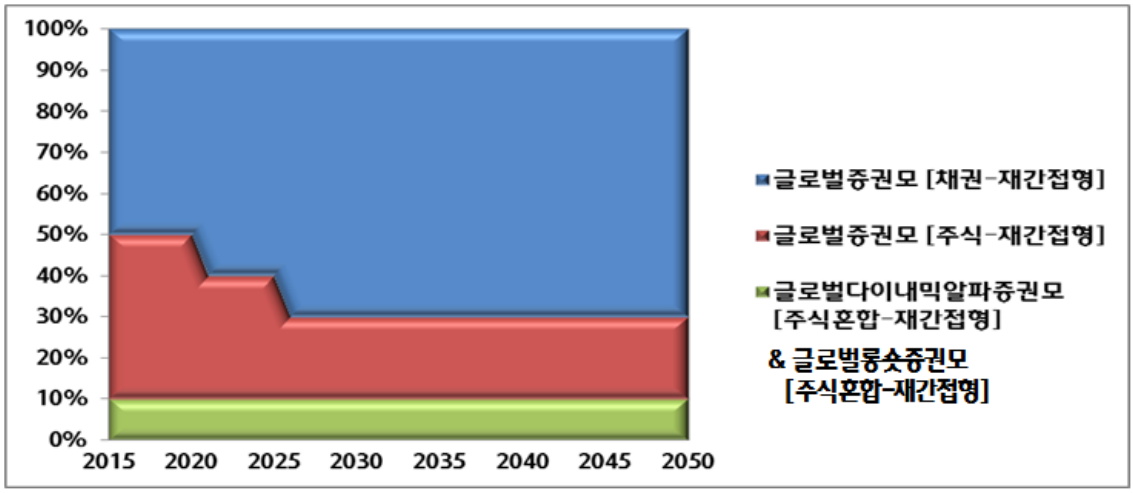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 UBS 글로벌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추가)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별첨 1>

[변경 전]

<자산배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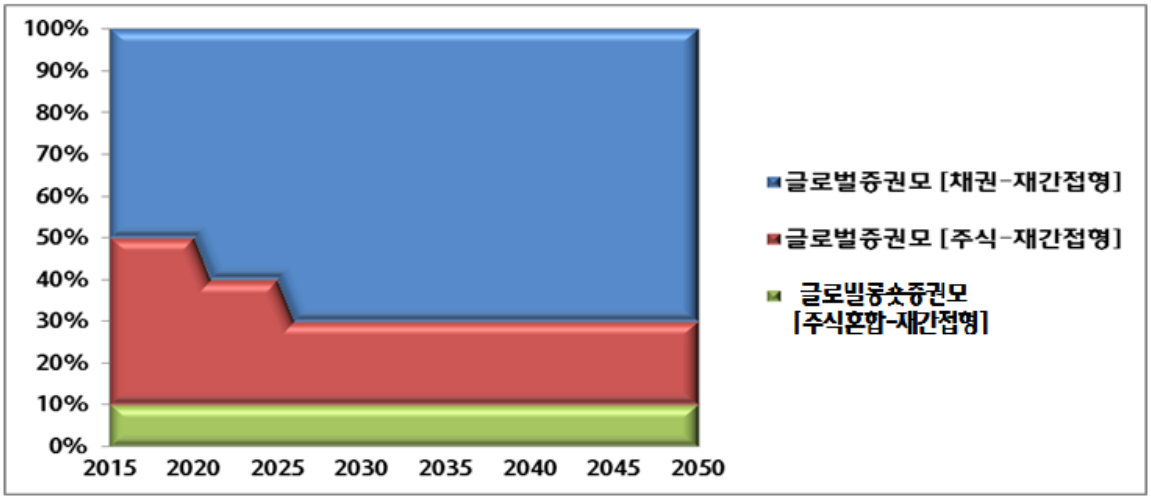
연도	2014~2020	2021~2025	2026~2030	2031~2035	2036~2040	2041~2045	2046~2050
글로벌증권모 [주식-재간접형]	40%	30%	20%	20%	20%	20%	20%
글로벌증권모 [채권-재간접형]	50%	60%	70%	70%	70%	70%	70%
글로벌다이내믹알파 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 글로벌롱숏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10%	10%	10%	10%	10%	10%	10%

주1) 상기 자산배분 시나리오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비중조절 시기,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과 글로벌롱숏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은 합하여 최대 10% 이내임.

[변경 후]

<자산배분 시나리오>



연도	2014~ 2020	2021~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1~ 2045	2046~ 2050
글로벌증권모 [주식-재간접형]	40%	30%	20%	20%	20%	20%	20%
글로벌증권모 [채권-재간접형]	50%	60%	70%	70%	70%	70%	70%
글로벌롱숏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10%	10%	10%	10%	10%	10%	10%

주1) 상기 자산배분 시나리오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비중조절 시기,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삭제(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매매, 평가이익 유보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6)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롱숏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모투자신탁 삭제(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매매, 평가이익 유보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6)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이장호, 성준석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이장호, 김준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2)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자산배분 시나리오> **<별첨 1>**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자산배분 시나리오> **<별첨 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2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신설>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항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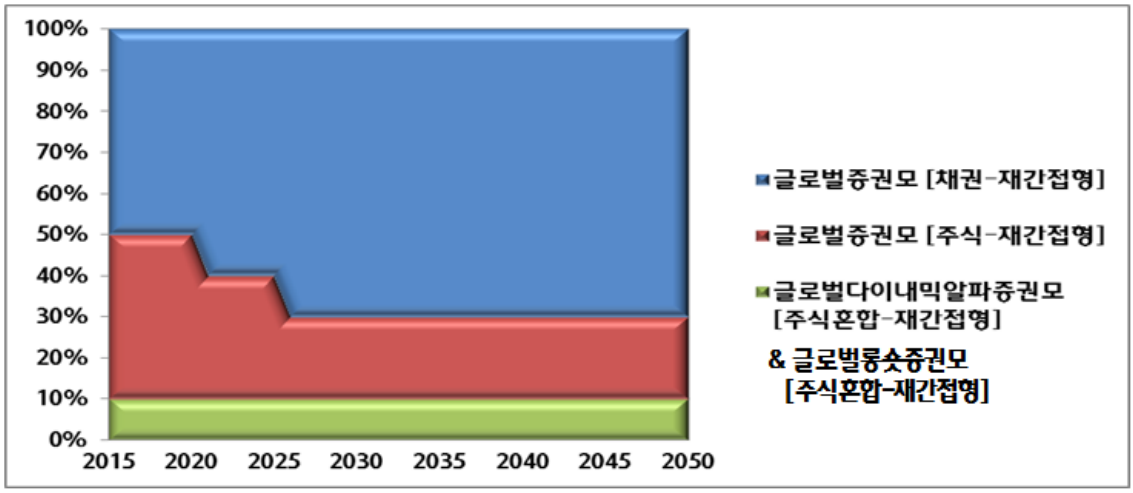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 UBS 글로벌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추가)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별첨 1>

[변경 전]

<자산배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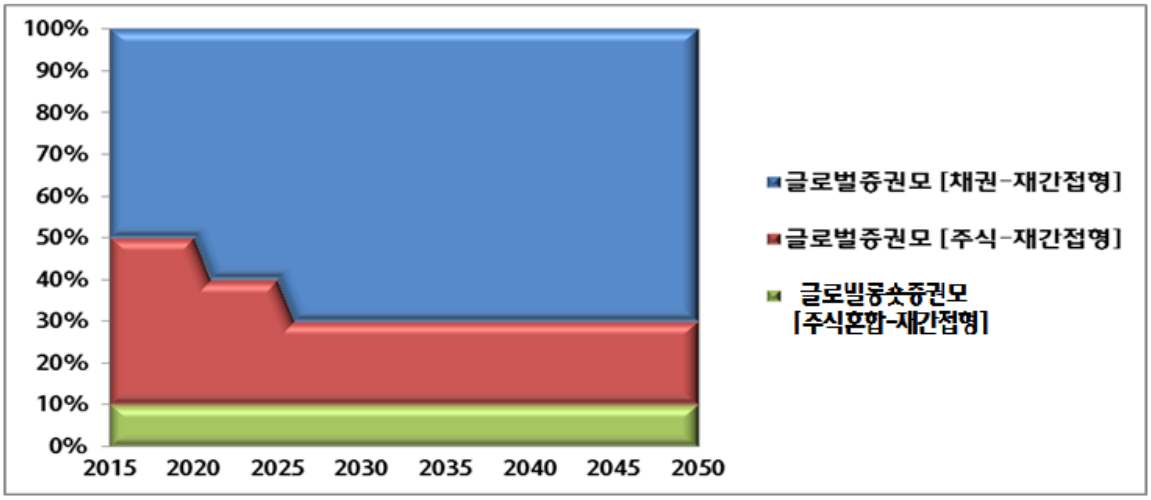
연도	2014~2020	2021~2025	2026~2030	2031~2035	2036~2040	2041~2045	2046~2050
글로벌증권모 [주식-재간접형]	40%	30%	20%	20%	20%	20%	20%
글로벌증권모 [채권-재간접형]	50%	60%	70%	70%	70%	70%	70%
글로벌다이내믹알파 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 글로벌롱숏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10%	10%	10%	10%	10%	10%	10%

주1) 상기 자산배분 시나리오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비중조절 시기,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과 글로벌롱숏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은 합하여 최대 10% 이내임.

[변경 후]

<자산배분 시나리오>



연도	2014~ 2020	2021~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1~ 2045	2046~ 2050
글로벌증권모 [주식-재간접형]	40%	30%	20%	20%	20%	20%	20%
글로벌증권모 [채권-재간접형]	50%	60%	70%	70%	70%	70%	70%
글로벌롱숏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10%	10%	10%	10%	10%	10%	10%

주1) 상기 자산배분 시나리오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비중조절 시기,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4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삭제(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롱숏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모투자신탁삭제(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이하	증권총액의 50% 이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자산배분 시나리오> **<별첨 1>**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자산배분 시나리오> **<별첨 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24일 이후 매년

	<신설>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항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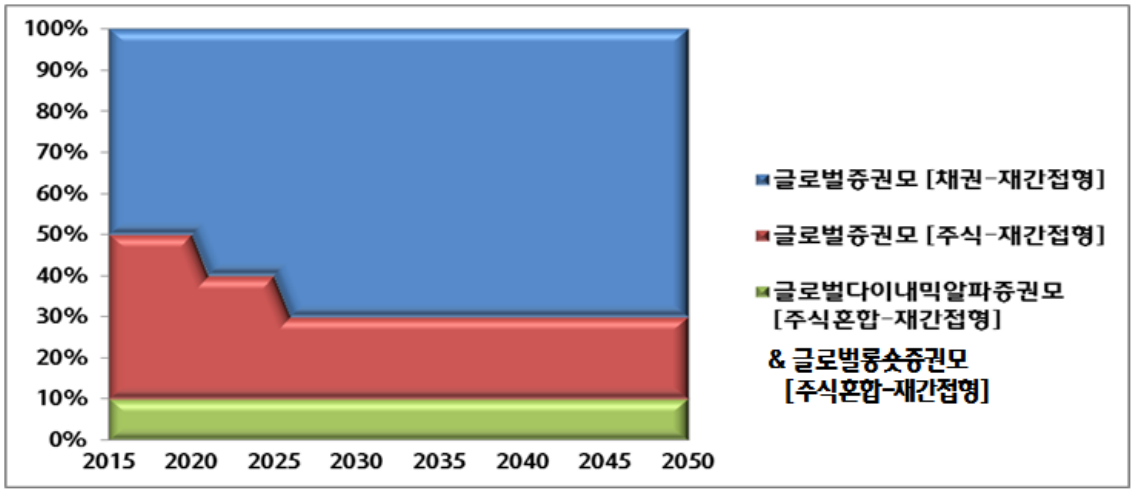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 UBS 글로벌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추가)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별첨 1>

[변경 전]

<자산배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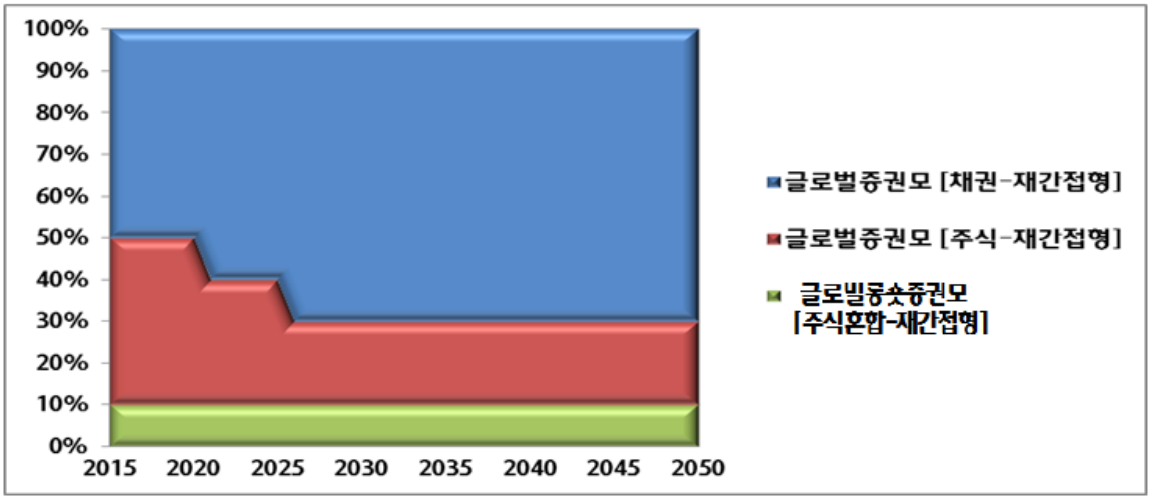
연도	2014~2020	2021~2025	2026~2030	2031~2035	2036~2040	2041~2045	2046~2050
글로벌증권모 [주식-재간접형]	40%	30%	20%	20%	20%	20%	20%
글로벌증권모 [채권-재간접형]	50%	60%	70%	70%	70%	70%	70%
글로벌다이내믹알파 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 글로벌롱숏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10%	10%	10%	10%	10%	10%	10%

주1) 상기 자산배분 시나리오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비중조절 시기,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과 글로벌롱숏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은 합하여 최대 10% 이내임.

[변경 후]

<자산배분 시나리오>



연도	2014~ 2020	2021~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1~ 2045	2046~ 2050
글로벌증권모 [주식-재간접형]	40%	30%	20%	20%	20%	20%	20%
글로벌증권모 [채권-재간접형]	50%	60%	70%	70%	70%	70%	70%
글로벌롱숏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10%	10%	10%	10%	10%	10%	10%

주1) 상기 자산배분 시나리오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비중조절 시기,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삭제(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롱숏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모투자신탁삭제(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자산배분 시나리오> **<별첨 1>**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자산배분 시나리오> **<별첨 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2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1. 재무정보**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

		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해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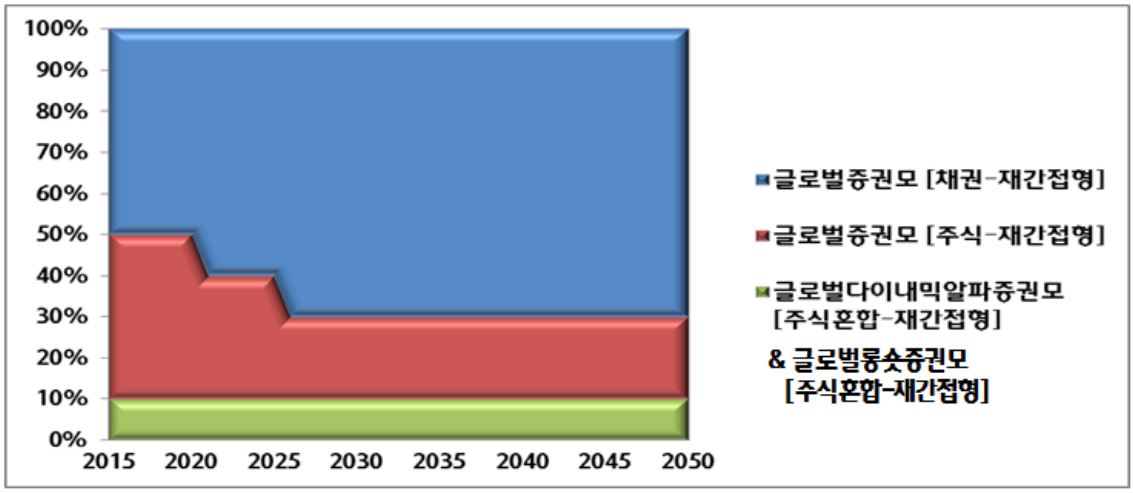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 UBS 글로벌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추가)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별첨 1>

[변경 전]

<자산배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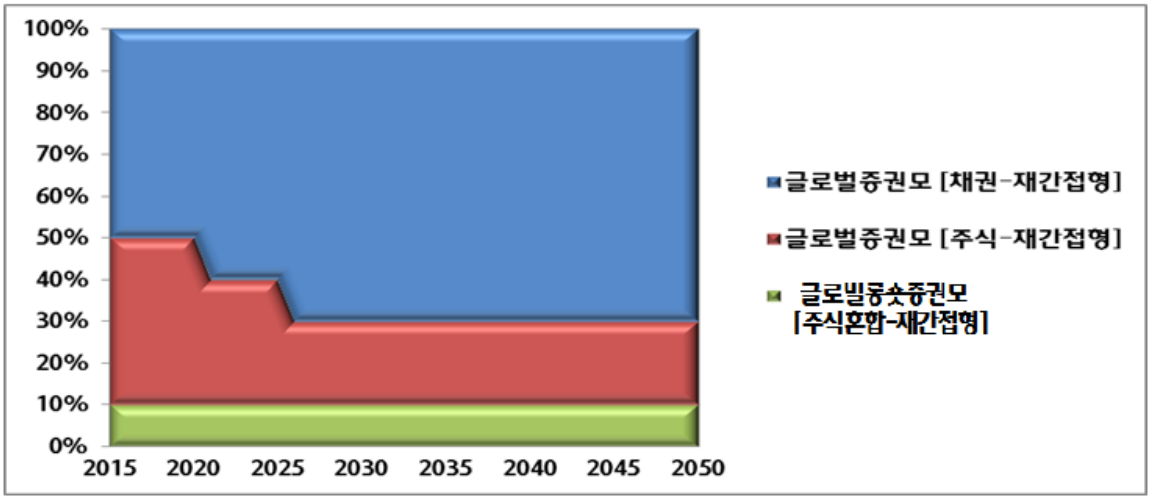
연도	2014~ 2020	2021~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1~ 2045	2046~ 2050
글로벌증권모 [주식-재간접형]	40%	30%	20%	20%	20%	20%	20%
글로벌증권모 [채권-재간접형]	50%	60%	70%	70%	70%	70%	70%
글로벌다이내믹알파 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 글로벌롱숏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10%	10%	10%	10%	10%	10%	10%

주1) 상기 자산배분 시나리오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비중조절 시기,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글로벌다이내믹알파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과 글로벌롱숏증권모[주식혼합-재간접형]은 합하여 최대 10% 이내임.

[변경 후]

<자산배분 시나리오>



연도	2014~ 2020	2021~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1~ 2045	2046~ 2050
글로벌증권모 [주식-재간접형]	40%	30%	20%	20%	20%	20%	20%
글로벌증권모 [채권-재간접형]	50%	60%	70%	70%	70%	70%	70%
글로벌롱숏증권모 [주식혼합-재간접형]	10%	10%	10%	10%	10%	10%	10%

주1) 상기 자산배분 시나리오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비중조절 시기,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글로벌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매매, 평가이익 유보
3)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 매매, 평가이익 유보 3)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4)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이장호, 성준석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이장호, 김준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 투자대상** **2. 채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 투자대상**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3) 하나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2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추가)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 글로벌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법 개정사항 반영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현 행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법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아니할 것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생략)	[1] 투자전략 4.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글로벌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법 개정사항 반영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법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구에 관한 사항	**(1) 투자대상** **1)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 투자대상** **1)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생략)	[1] 투자전략 4.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행복knowhow 글로벌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법 개정사항 반영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현 행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법 개정사항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2부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생략)	[1] 투자전략 4.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추가
3) 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4)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등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1.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투자비율은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다.	3.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된다.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추가
3)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4)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등 반영</td></tr>
<tr><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생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2">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주요 투자대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
<tr><td>주요 투자전략</td><td>-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해외 주식, 리츠 등 다양한 인컴 관련 자산에 분산투자
- 종목 선택 및 듀</td></tr>
</table></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삭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2">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주요 투자대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50% 이상</td></tr>
<tr><td>주요 투자전략</td><td>-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해외 주식, 리츠 등 다양한 인컴 관련 자산에 분산투자</td></tr>
</table></td></tr>
</table>

			레이션 관리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목표			- 종목 선택 및 듀레이션 관리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목표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 투자 대상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주요 투자 전략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주요 투자 대상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주요 투자 전략	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table>
<tr><td></td><td>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td><td>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
탁[채권혼합-
재간접형]</td><td>90%
이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
에 50% 이상
투자</td></tr>
</table>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
탁[채권혼합-
재간접형]</td><td rowspan="2">60%
이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
투자신탁[채권
-재간접형]</td><td>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
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td><td>40%
이하</td><td>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
</table>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td></tr>
</table>

<table>
<tr><td></td><td>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td><td>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추가>

(2) 투자제한
<추가></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별첨 1>

(2)투자제한
<별첨 2></td></tr>
<tr><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90% 이상</td></tr></table>
(2) 유동성 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 rowspan="2">60% 이상</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r></table>
(2) 유동성 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 및 자산배분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별첨 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 3)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는 연간 0.720%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 와 Rebate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과세** **(신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2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

		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모투자신탁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 중 10% 이하로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 주석사항 (추가)	**※ 주석사항**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모투자신탁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 중 10% 이하로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입니다. 2. 투자전략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90% 이상</td></tr></table> 2) 유동성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 rowspan="2">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주요 투자 대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tr><td>주요 투자 전략</td><td>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table>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 rowspan="2">60% 이상</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r></table> 2) 유동성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 rowspan="2">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주요 투자 대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tr><td>주요 투자 전략</td><td>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tr><td rowspan="2">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주요 투자 대상</td><td>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tr><td>주요 투자 전략</td><td>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td><td>주요 투자</td><td>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td></tr></table>

<table>
<tr><td></td><td>(1) 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2) 투자자산군 투자 비중 조절 → 하위 투자자산의 비중 조정 →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위험관리의 순으로 자산배분 프로세스 운용 및 관리</td><td><table>
<tr><td>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대상</td><td>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
<tr><td></td><td>주요 투자 전략</td><td>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
</table>
(삭제)

(삭제)</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성준석</td><td>[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김준래</td></tr>
</table>

<별첨 1>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 다만,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함
2. 주식	**40% 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장내파생상품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4.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6.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7. 증권의 차입	주식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8.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다.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3)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다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사모사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5.장내파생상품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집합투자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다.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별첨 2>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함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나목을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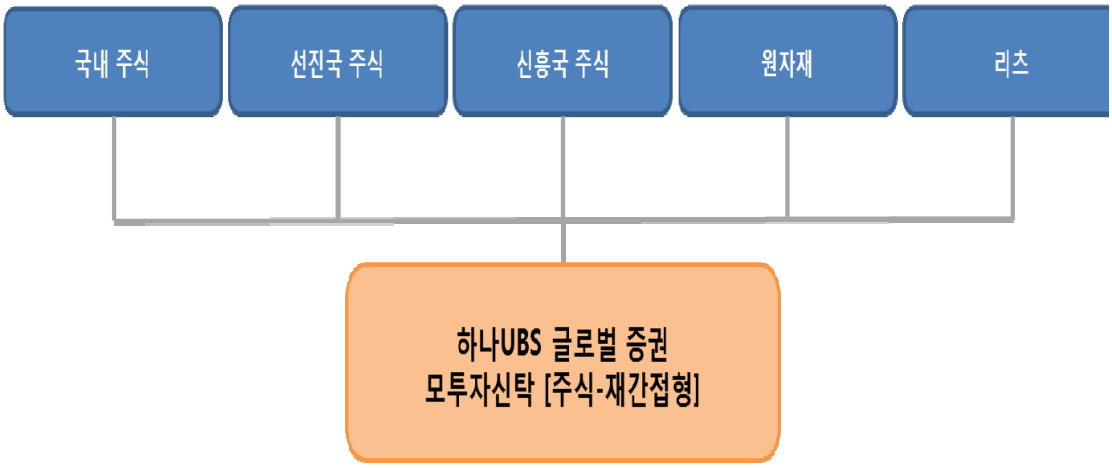
<별첨 3>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1)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시장 상황에 따라 원자재, 리츠 등 대안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가능)



(2) 하나금융투자의 자문을 참고로 하여 지역별/자산별 자산 배분 및 리밸런싱

- 주요 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 60%이상
- 글로벌 분산투자: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한편, 분산투자 및 인플레이션 헤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Commodity) 및 부동산(REIT) 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배분: 각 시장의 상황 및 전망에 따라 지역 및 자산별 비중을 조절합니다.
- 자산운용방침: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용방침으로 하되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자산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제경제상황,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중에서도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나, 시장상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상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판단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헷지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90% 수준입니다**.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 투자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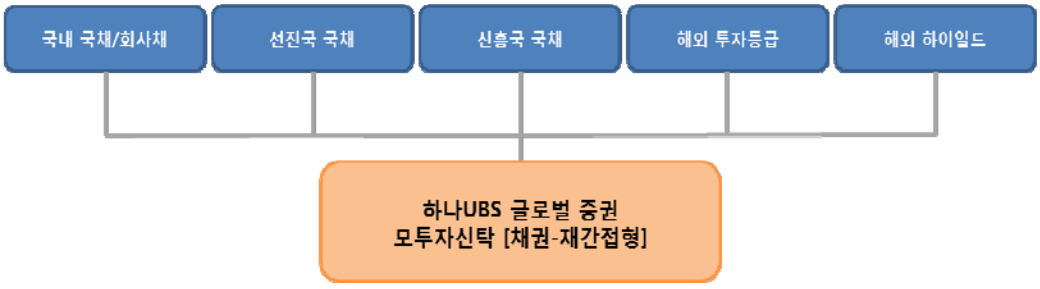
- 투자자문업자: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는 경기국면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산군별 투자정보 자문서비스 제공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1) 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2) 하나금융투자의 자문을 참고로 하여 지역별/자산별 자산 배분 및 리밸런싱

- ■ 주요 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 60%이상
- ■ 글로벌 분산투자: 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 자산배분: 각 시장의 상황 및 전망에 따라 지역 및 자산별 비중을 조절합니다.
- ■ 자산운용방침: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용방침으로 하되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자산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제경제상황,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중에서도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활

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나, 시장상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상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판단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BP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헷지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90% 수준입니다**.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채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 투자자문

- 투자자문업자: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는 경기국면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산군별 투자정보 자문서비스 제공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추가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등 반영
4)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등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3.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투자비율은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다.	1.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

		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추가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등 반영 4)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삭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주요 투자대상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해외 주식, 리츠 등 다양한 인컴 관련 자산에 분산투자 - 종목 선택 및 듀레이션 관리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목표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주요 투자대상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주요 투자전략	-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해외 주식, 리츠 등 다양한 인컴 관련 자산에 분산투자 - 종목 선택 및 듀레이션 관리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목표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주요 투자전략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주요 투자대상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table>
<tr><td></td><td></td><td></td><td>주요 투자 전략</td><td>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인컴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td><td colspan="3">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90% 이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
</table></td><td colspan="3">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 rowspan="2">60% 이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
</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td>
<td>
<table>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d>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
</table>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추가>

(2) 투자제한
<추가></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별첨 1>

(2)투자제한
<별첨 2></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
<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td><td>90% 이상</td></tr>
</table>
</td>
<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td><td>60% 이상</td></tr>
</table>
</td>
</tr>
</table>

	-재간접형]	
	(2) 유동성 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 및 자산 배분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	-재간접형]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40% 이하 2) 유동성 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별첨 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주 3)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 와 Rebate 에 따라 변동될 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이하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이하 현행과 같음)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모투자신탁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 중 10% 이하로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추가)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table>
<tr><td></td><td></td><td>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모투자신탁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 중 10% 이하로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90% 이상</td></tr></table>
2) 유동성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하나 UBS 글로벌</td><td>주요 투자</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td></tr></table></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 rowspan="3">60% 이상</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r><tr><td>40% 이하</td></tr></table>
2) 유동성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하나 UBS 글로벌</td><td>주요 투자</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 rowspan="2">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대상</td><td>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
<tr><td>주요 투자 전략</td><td>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
</table>
(1) 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2) 투자자산군 투자 비중 조절 → 하위 투자자산의 비중 조정 →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위험관리의 순으로 자산배분 프로세스 운용 및 관리
</td>
<td>
<table>
<tr><td rowspan="2">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대상</td><td>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
<tr><td>주요 투자 전략</td><td>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
<tr><td rowspan="2">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주요 투자 대상</td><td>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
<tr><td>주요 투자 전략</td><td>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
<tr><td rowspan="2">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주요 투자 대상</td><td>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
<tr><td>주요 투자 전략</td><td>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
</table>
(삭제)

(삭제)
</td>
</tr>
<tr>
<td>II.</td>
<td>[1] 투자전략</td>
<td>[1] 투자전략</td>
</tr>
</table>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성준석 (생략)	**3. 운용전문인력** 김준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별첨 1>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 다만,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함
2. 주식	**40% 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장내파생상품	1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

	(위험평가액 기준)	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4.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6.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7. 증권의 차입	주식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8.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마.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바.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3)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다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사모사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

		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5.장내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집합투자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마.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바.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별첨 2>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함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증권 적용 특례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나목을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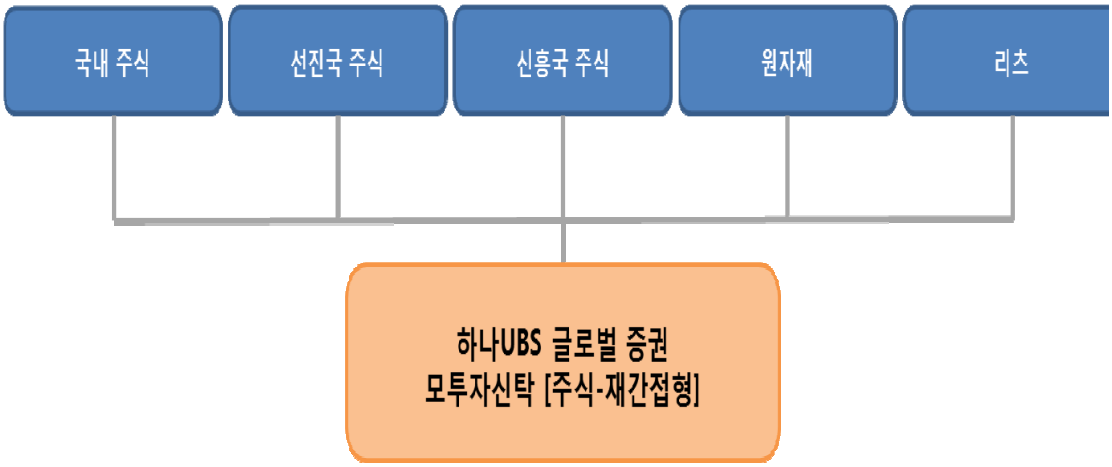
<별첨 3>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1)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시장 상황에 따라 원자재, 리츠 등 대안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가능)



(2) 하나금융투자의 자문을 참고로 하여 지역별/자산별 자산 배분 및 리밸런싱

- ■ 주요 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 60%이상
- ■ 글로벌 분산투자: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한편, 분산투자 및 인플레이션 헤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Commodity) 및 부동산(REIT) 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자산배분: 각 시장의 상황 및 전망에 따라 지역 및 자산별 비중을 조절합니다.
- ■ 자산운용방침: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용방침으로 하되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자산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제경제상황,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중에서도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나, 시장상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상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판단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

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헷지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90% 수준입니다**.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 투자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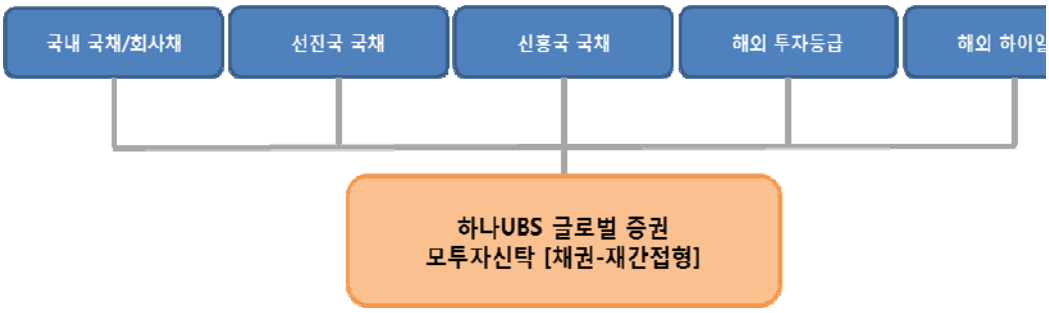
- 투자자문업자: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는 경기국면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산군별 투자정보 자문서비스 제공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3) 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4) 하나금융투자의 자문을 참고로 하여 지역별/자산별 자산 배분 및 리밸런싱

- 주요 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 60%이상
- 글로벌 분산투자: 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자산배분: 각 시장의 상황 및 전망에 따라 지역 및 자산별 비중을 조절합니다.
- 자산운용방침: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용방침으로 하되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자산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제경제상황,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중에서도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나, 시장상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상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판단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BP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헷지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90% 수준입니다**.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채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 투자자문

- 투자자문업자: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는 경기국면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산군별 투자정보 자문서비스 제공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추가
3) 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4)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등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3.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1.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투자비율은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다.	3.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 33 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차입 등의 제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추가
3)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4)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등 반영</td></tr>
<tr><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td><td>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td></tr>
<tr><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생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2">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주요 투자대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
<tr><td>주요 투자전략</td><td>-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해외 주식, 리츠 등 다</td></tr>
</table></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삭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2">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주요 투자대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50% 이상</td></tr>
<tr><td>주요 투자전략</td><td>-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해외 주식, 리츠</td></tr>
</table></td></tr>
</table>

			양한 인컴 관련 자산에 분산투자 - 종목 선택 및 듀레이션 관리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목표			등 다양한 인컴 관련 자산에 분산투자 - 종목 선택 및 듀레이션 관리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목표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 투자 대상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주요 투자 전략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주요 투자 대상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주요 투자 전략	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table>
<tr>
<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
<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인컴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td>
<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90% 이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
</table>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 rowspan="2">60% 이상</td><td>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d>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
</table>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td>
</tr>
</table>

<table>
<tr>
<td></td>
<td>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td>
<td>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추가>

(2) 투자제한
<추가></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별첨 1>

(2)투자제한
<별첨 2></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td>
<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90% 이상</td></tr></table>
(2) 유동성 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td>
<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 rowspan="2">60% 이상</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r></table>
(2) 유동성 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td>
</tr>
</table>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 및 자산 배분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별첨 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주 3)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는 연간 0.720%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 와 Rebate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과세** **(신설)**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2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

해 필요한 사항	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모투자신탁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 중 10% 이하로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입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주석사항** (추가)	**※ 주석사항**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모투자신탁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 중 10% 이하로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증권투자신탁(재간접형)입니다.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90% 이상

2) 유동성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주요 투자 대상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주요 투자 전략	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60% 이상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40% 이하

2) 유동성자산

(생략) 투자신탁 자산 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총액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주요 투자 대상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주요 투자 전략	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주요 투자 대상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주요 투자 전략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table>
<tr><td></td><td>(1) 안정적인 인컴(이자, 배당, 자본이득)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2) 투자자산군 투자 비중 조절 → 하위 투자자산의 비중 조정 →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위험관리의 순으로 자산배분 프로세스 운용 및 관리</td><td>
<table>
<tr><td></td><td></td><td>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
<tr><td rowspan="2">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주요 투자 대상</td><td>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td></tr>
<tr><td>주요 투자 전략</td><td>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td></tr>
</table>
(삭제)

(삭제)</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성준석</td><td>[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김준래</td></tr>
</table>

<별첨 1>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 다만,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함
2. 주식	**40% 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함)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장내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4.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5.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6.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7. 증권의 차입	주식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8.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아.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자.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3)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

		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다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사모사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5.장내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8.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9.증권의 차입	집합투자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10.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아.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자.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별첨 2>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함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나목을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별첨 3>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2)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1)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시장 상황에 따라 원자재, 리츠 등 대안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가능)



(2) 하나금융투자의 자문을 참고로 하여 지역별/자산별 자산 배분 및 리밸런싱

- 주요 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 60%이상
- 글로벌 분산투자: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한편, 분산투자 및 인플레이션 헤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Commodity) 및 부동산(REIT) 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배분: 각 시장의 상황 및 전망에 따라 지역 및 자산별 비중을 조절합니다.
- 자산운용방침: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용방침으로 하되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자산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제경제상황,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중에서도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활

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나, 시장상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상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판단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참고지수 :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가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MSCI World Index 45% + MSCI EM Index 20% + KOSPI200 20%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5% + EPRA/NAREIT Developed Index 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헷지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90% 수준입니다**.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 투자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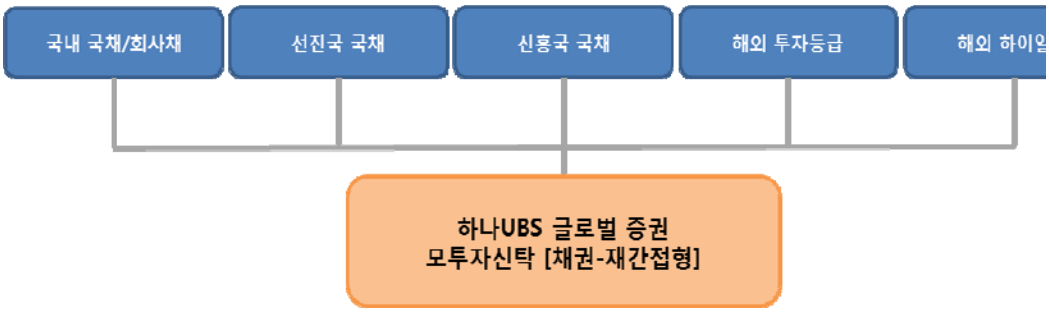
- 투자자문업자: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는 경기국면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산군별 투자정보 자문서비스 제공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5) 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6) 하나금융투자의 자문을 참고로 하여 지역별/자산별 자산 배분 및 리밸런싱

- ■ 주요 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 60%이상
- ■ 글로벌 분산투자: 국내채권형 및 해외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 자산배분: 각 시장의 상황 및 전망에 따라 지역 및 자산별 비중을 조절합니다.
- ■ 자산운용방침: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용방침으로 하되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자산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제경제상황,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

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중에서도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나, 시장상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상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판단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참고지수 :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 BP 종합지수 35% + Call 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Cit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30% + iBoxx $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20% + Barclays High Yield Index 10% + 매경BP종합지수 35% + Call 5%**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헷지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90% 수준입니다**.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채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 투자자문

- 투자자문업자: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는 경기국면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자산군별 투자정보 자문서비스 제공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법 개정사항 및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3)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4)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5) 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신설>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현 행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법 개정사항 반영 3)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우주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⑶ 기타 제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⑶ 기타 제한 사항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주 3)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는 연간 1.3%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 와 Rebate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 3) 합성총보수·비용은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3%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

		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신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2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

		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

		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

	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추가)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 합성총보수·비용은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3%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1] 투자전략 3.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우주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인Best연금 글로벌롱숏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법 개정사항 반영
3)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4)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5)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6) 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현 행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및 법 개정사항 반영 3)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4)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5)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우주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1) 하나 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3.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5.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2)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투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 특례>**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 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주 3)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는 연간 1.3%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 와 Rebate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 3) 합성총보수·비용은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3%로 예상하여 산출하였

		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1월 2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추가)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합성총보수·비용은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3%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1] 투자전략 3.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우주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전술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운용역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6년 11월 24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현 행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1월 24일 운용역 변경
제2부 5.운용전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인력에 관한 사항	이장호, 성준석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생략)	이장호, 김준래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성준석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이장호, 김준래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자투자신탁 추가
2) 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3)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4)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하나UBS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0.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1.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며, 사모사채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것, 후순위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것에 한한다)(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6호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생략)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생략)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5호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생략, 현행과 동일)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 (생략, 현행과 동일)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제4항제2호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제4항제2호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예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자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자투자신탁 추가
2)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3)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하나UBS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0.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1.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1항 7. 환매조건부매매(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6호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생략)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생략)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5호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생략, 현행과 동일)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 (생략, 현행과 동일)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4항제2호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4항제2호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⑥ 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자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⑥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롱숏 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1)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2)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등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6호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생략)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생략)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6호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생략, 현행과 동일)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 (생략, 현행과 동일)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4항제2호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제4항제2호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33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1월 24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⑥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자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⑥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